

FTA 핵심 용어집

용어를 알면,
FTA가
쉬워집니다!



FTA 핵심 용어집

용어를 알면,
FTA가
쉬워집니다!



용어를 알면, FTA가 쉬워집니다.

최근 세계 무역 환경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한편, 국제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허브국을 지향하면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협정·5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FTA 교역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의 72.4%, 수입의 62.5%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FTA 활용에 있어 용어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15개 협정문에 등장하는 FTA 용어들은 전문적이고 생소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그동안 자주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용어부터 처음 접하는 용어까지 FTA 핵심 용어만을 간추려 찾아보기 쉽도록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FTA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인천본부세관장

이관기

SEARCH...



FTA 용어 한글로 찾아보기 Index

ㄱ, ㄴ, ㄷ

- 가공공정기준 10
- 개별기준 10
- 공장도거래가격 11
- 공정누적 11
- 공제법 11
- 관세가격 13
- 관세당국 13
- 국제원산지정보원 12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2
- 누적기준 13
- 누적조항 13
- 다국누적 13
- 대체가능물품 14
- 대체원산지증명서 14
-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및 절차 14

ㄹ, ㅁ, ㅂ

- 롤업 15
- 류, 호 및 소호 15
- 미소기준 16
- 발급기관 17
- 보정 요구 17
- 본선인도가격 17
- 부가가치 17
- 부가가치 누적 18
- 부가가치 기준 18
- 부산물 19
- 부산물공제 19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19
- 부품가액 기준 20
- 불완전생산물 20
- 불완전 룰 다운 20
- 불인정공정 21
- 비누적 21
-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 22
- 비원산지 재료가격 공제요소 22
- 비허용 이자비용 22



人

상품가격(조정가격) 계상기준 22

상품의 순위가 23

상호대응세율제도 23

상호주의 원칙 24

상호 협력 24

생산 24

생산자 25

생산자 보관서류 25

생산자 서면진술서 25

서명권자 25

선입선출법 26

선적서류 26

선적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26

선택기준 27

선하증권 27

섬유류 통관협력 28

섬유원료기준 28

세계관세기구 28

세계무역기구 29

세번 29

세번변경기준 30

세액 보정 31

세트물품 31

소급원산지증명서 31

소급호 배제규정 31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 32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32

송품장(송장) 32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33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33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33

수입자 33

수입재료 가격 34

수입자 보관서류 34

수출자 34

수출자 보관서류 35

순위가법 35

스파게티 볼 효과 36

실질변형기준 36

○

아세안 36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37

양국누적 37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37

역내가공원칙 38

역내부가가치법 38

역내산 재료가치 39

역내선박 인정요건 39

역내 완전생산품 40

역외가공 40

역외가공 허용기준 40

역외가공 적용물품 41

역외산 재료 41

연결원산지증명서 42

- 염색가공 공정 기준 42
- 영역 42
- 영해 42
- 완전 미조립물품 43
- 완전생산 간주물품 43
- 완전생산물품 43
- 완전생산기준 44
- 외부 원산지전문가 45
- 원사기준 45
- 원산지 46
- 원산지 검증 46
- 원산지 검증방식 47
- 원산지 결정 47
- 원산지 결정기준 48
-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48
-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48
-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 원산지상품 49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49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50
-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50
- 원산지 증빙서류 50
- 원산지 특례규정 51
- 원산지 판정 51
- 원산지 포괄증명 51
- 원산지 확인기준 52
- 원산지가 아닌 국기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52
- 원산지결정 공통기준 52
- 원산지결정 기본원칙 53
-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53
- 원산지관리사 53
- 원산지규정 54
- 원산지소명서 54
-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55
-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55
-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55
-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55
-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56
- 원산지조사의 기간 56
- 원산지조사의 범위 57
- 원산지증명서 57
- 원산지증명서 발급 57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58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58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 59
-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59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60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60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60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61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61
-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62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62
-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62
-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63
-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63
-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63
- 원산지 판정 64
- 원산지 표시 64

- 원산지 확인 64
- 원산지 확인서 64
- 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65
- 원산지확인 서류 65
-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66
- 유럽자유무역연합 66
- 유사누적기준 66
- 유사물품 66
- 일국 완전생산품 67
- 일반기준 67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67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68
- 임시원산지증명서 68
- 조정가격 72
- 중간재 72
- 중간재 흡수 원칙 73
- 중간재 규정 73
- 증명서발급기관 73
-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74
- 직접운송원칙 74
- 직접운송원칙 예외 75
- 집적법 75
- 체약상대국 75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75
- 최혜국대우 76
- 충분가공원칙 76
- 특정 공정기준 76
-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77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77
- 품목별 원산지기준 77
- 품목분류 78
- 품목분류사전심사 78
- 현지조사 7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79
- 협정관세 적용배제 79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79

자, 차, 티, 피, 등

- 자가생산된 재료 69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69
- 자율발급제 70
- 재단&봉제 공정 기준 70
- 재료명세 70
- 재료의 가격 71
- 재생용품 71
- 재수출 · 환적 원산지증명서 72
- 제3국 72

SEARCH...



FTA 용어 영어로 찾아보기 Index

A

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73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19
 Accumulation of process 11
 Accumulation of value added 18
 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 13
 Accumulation 13
 Applicant of C/O 59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s 37
 ASEAN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36

B, C

B/L : Bill of Lading 27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42
 BD : Build-Down method 11
 BOM : Bill Of Materials 70
 BU : Build-Up method 75
 By-products 19
 C/O : Certificate of Origin 57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15
 Complete Knock Down Goods 43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63
 Correction of tax amount 31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54
 Country of origin 46
 Criteria of individual 10
 Criteria of Origin Certification 52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48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0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50
 Customs authority 12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28
 Customs Value 12
 Cut & Sew criteria 70

D, E, F

De minimis 16
 Deduction on by-products 19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79
 Determination of origin 51
 Diagonal cumulation 66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42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66
 Exporter 34
 EXW : Ex-Works 11
 Fiber forward 28
 First-In-First-Out 26
 FOB : Free On Board 17
 FTA-Pass 77
 Fungible goods 14

G, H, I, K

General rules 67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67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68
 HS code 29
 Importer 33
 Incompleted roll down 20
 Indirect material 72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non-qualifying operation 21
 Invoice 32
 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 31
 Issuing authority 17
 Issuing C/O after shipment 26
 KIOI :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12

M, N, O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69
 Materials for confirming certificate of origin 62
 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76
 Mutual cooperation 24
 Net Cost Method 35
 Net cost of the goods 23
 Non-allowable interest costs 22
 Non-cumulation 21
 Non-Originating Goods or Non-Originating Materials 22
 OCP :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 of Origin 55
 OP : Outward Processing 40
 Origin Verification Method 47
 Origin verification 46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Goods 49
 Outward Process 41

P,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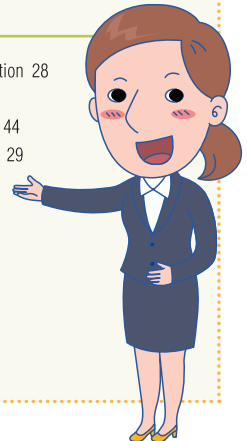
Pre-confirmation of tariff 78
 Preference criterion 47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direct consignment) 74
 Principle of reciprocity 24
 Producer 25
 Production 24
 PSR : Product Specific Rules 77
 Reciprocal tariff rate 23
 Recovered Goods 71
 Re-export / Trans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72
 Regional Contents 38
 Reinsurance of C/O 60
 Replacement certificate of origin 14
 Roll up 15
 ROO : Rules of origin 54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 Value Added Criterion 18

S, T, V

Sets 31
 Shipping documents 26
 Signatory 24
 Similar Goods 66
 Spaghetti Bowl Effect 36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10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6
 Supporting Documents 50
 Tariff classification 78
 Temporary certificate of origin 68
 Territorial Sea 42
 Territory 42
 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76
 The other party 75
 the price of imported materials 34
 Third country 72
 Value added 17
 Value of Materials 71
 Value of Parts 20
 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41
 Voluntary Issuing 70
 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39

W, Y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28
 Wholly Obtained Goods 42
 WO : Wholly Obtained Criterion 44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29
 Yarn forward 45



가공공정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재단, 봉제공정」,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시 특정 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와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개별기준

Criteria of individual

개별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 별표에 각 품목번호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에 기반한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및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주를 이룸

이들 중 2개 이상을 제시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합기준, 복수의 기준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 등이 있음

공장도거래가격

EXW : Ex-Works

물품을 생산 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공정누적

Accumulation of process

누적은 투입요소 측면과 지역적 범위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 하에서 허용, 투입요소는 재료와 공정의 누적이 허용됨
공정누적에 의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됨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상품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공제)한 부분이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면 유리함

* 공제법

$$\frac{\text{제품가격(FOB)} - \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 \frac{35,000 - 20,000}{35,000} \times 100 = 42.9\%$$

관세가격

Customs Value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요소로서 통상 ①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②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함

관세당국

Customs authority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관세분야에 한함)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

국제원산지정보원(재)

KIOI :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 조사, 정보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기관발급 FTA :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FTA FTA 중 스위스 산 치즈



누적기준

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누적조항

Accumulation

■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체약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부가가치누적'과 협정 상대국의 재료를 국산재료로 인정하는 '재료누적' 및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이 있음

예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 면도기를 생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재료로 인정

다국누적

■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1+n 또는 n+n방식으로 누적을 인정하는 것

아세안 및 EFTA와의 FTA에서 1+n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나, 품목별기준에서 다국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재료 또는 물품

대체원산지증명서

Replacement certificate
of origin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세관이 다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일반원산지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함

롤업

Roll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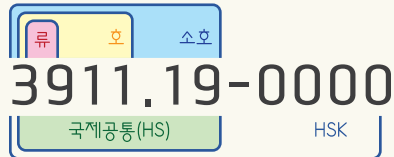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결합하여 생산한 “재료”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흡수조항이라고 함



류, 호 및 소호

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류, 호 및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함



미소기준

De minimis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이라고도 함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이나 재료를 둘러싼 원산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

수입산 밍크카라(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카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8-10%) 이하이므로 밍크코트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인정



발급기관

Issuing authority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함

예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세관

보정요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신청자에게 보완토록 하는 제도

본선인도가격

FOB : Free On Board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

부가가치

Value added

최초 원가를 제외하고, 물품의 각 생산 단계에서 증가된 가액의 합계액

부가가치 누적

Accumulation of value added

역내 복수 생산자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 계산시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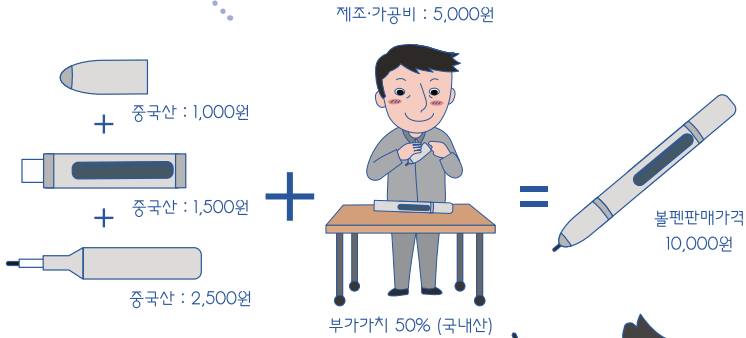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기준)

RVC : Regional Value Contents
/ Value Added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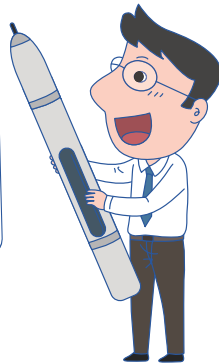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이 있음

예

RVC 40 기준일 때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볼펜 제조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판매가격 대비 일정비율(RVC 40)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합니다.



부산물

By-products

수출물품 생산과정 중에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함

부산물공제

Deduction on by-products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자전거 도구세트, 차량용 잭, 전자제품용 코드와 같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가 인정됨

그러나 협정에 따라서는 부속품 등도 일반부품과 같이 일일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도 함
이러한 부속품 등의 특례는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함께 제공되고,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인 범위 내의 물품에 한정됨

부품가액 기준

Value of Parts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가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불완전생산품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한 상품



불완전 롤 다운

Incompleted roll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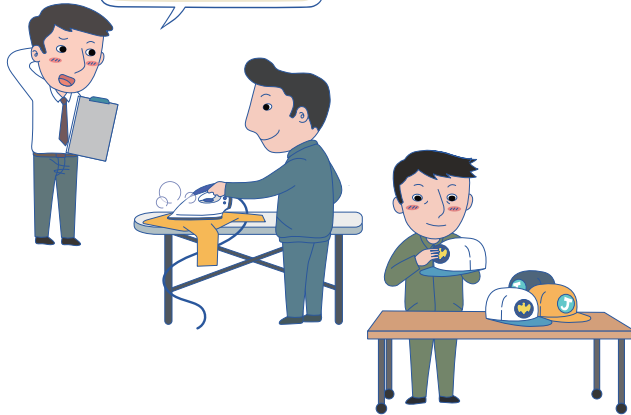
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 재료와 결합시켜 생산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계상하고(roll u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로 계상(roll down)하는 방법 외에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불인정공정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non-qualifying operation

역내에서 해당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불충분공정이라고도 함

다리미질이나 장식 부착은 단순공정이라 실질변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비누적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되,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

Non-Originating Goods or Non-Originating Materials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

비원산지 재료 가격 공제요소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 국제·국내운송 관련 비용(운송, 보험료 등), 수입제세(환급액 제외), 통관 수수료, 폐기물 비용(재활용분 제외), 비원산지 재료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등이 있음

비허용 이자비용

Non-allowable interest costs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함 (한-미 FTA)

상품가격(조정가격) 계상기준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모 값인 상품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상품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서 선적 후 수입지까지 운임·보험료·기타서비스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한-EFTA, 한-EU FTA의 경우 공장도가격(EXW)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FTA는 FOB가격을 기준으로 함



상품의 순원가

Net cost of the goods

한-미 FTA에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원가를 말함

- ①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
- ②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
- ③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다만, 모든 그러한 비용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합리적인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상호대응세율제도

Reciprocal tariff rate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상호주의 원칙

Principle of reciprocity

상대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 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 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관행이기도 함

상호 협력

Mutual cooperation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FTA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관 절차 간소화, 정보 교환, 세관 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말함



생산

Production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
 생산은 육지·강·바다 등에서 물품을 취득하거나 원재료·부품 등으로 물품을 만드는 모든 행위나 그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FTA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원칙으로 영역 내에서 생산을 요구하고 있음

생산자

Producer

■ 상품을 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재생산 및 번식,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하는 자를 말함

생산자 보관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재료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등 한마디로 원산지를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말함

생산자 서면진술서

■ 생산자가 휴폐업 등으로 원산지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서명권자

Signatory

■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로서 실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사람을 서명권자로 지정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서명권자로 지정하게 됨

선입선출법

First-In-First-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 중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입고한 물품 중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 또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

선하증권,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의 3가지로 이루어지며, 국가에 따라서는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용적증명명세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음

선적서류는 일괄해서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며, 무역품의 수도(受渡)나 매매에 사용되기도 함

선적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Issuing C/O after shipment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 하여야 함

선택기준

특정물품에 대한 개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수(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인 경우, 복수의 원산지 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CTH or RVC40%인 경우 두 개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이는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함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

섬유류 통관협력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기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섬유원료기준

Fiber forward

최종제품이 사,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섬유원료(Fiber)부터 원산지물품을 사용해서 원사를 방적하고, 직물을 짜고(제직, 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세계관세기구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와 조화,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설의 통일 등을 목적으로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관세법규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1994년 6월 총회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명칭을 WCO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적 성격의 사용에서만 CCC로 하고 그 밖에는 WCO를 사용함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1일 출범함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 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로 거듭남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 교역 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 규범 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교역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따라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세번

HS code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S)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하며 HS code로도 불림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게 됨

세계적 표준에 따라 물품을 1류부터 99류까지 대분류하고 통계산출, 과표근거, 통관조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부여하는 국제기준의 코드를 말하며, 6단위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며 그 미만은 나라마다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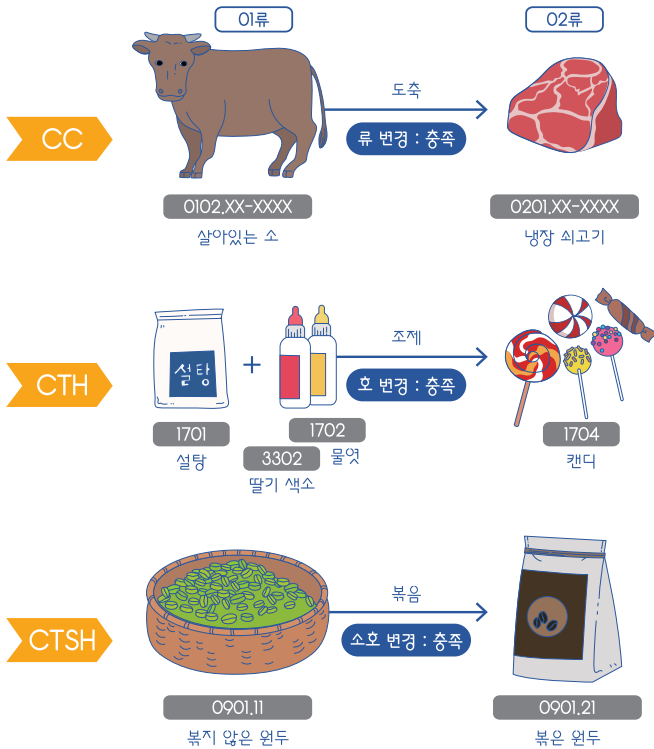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함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 * HS 2단위 변경(CC : Change of Chapter)
- * HS 4단위 변경(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 HS 6단위 변경(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있음



세액 보정

Correction of tax amount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바로 잡는 것

세트물품

Sets

HS 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 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 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소급원산지증명서

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소급호 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약기나 면도기 케이스와 같은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 용기,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용 포장, 용기는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 인정

다만, 소매포장용기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는 일반재료와 같이 원산지별로 계상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품목과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생략을 허용

송품장(송장)

Invoice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내용증명서 및 선적화물의 계산서로 수출자에게는 상품대금이나 비용의 청구서 및 화환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및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

* 서면 계산서 또는 세부 명세서로서, 보통 매도자의 성명과 주소,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선적된 물품리스트, 수하인 등을 표시한 인쇄물로 되어 있고, 성명과 주소가 나타나 있으며, 상품 명세, 수량, 가액 또는 가격 및 수수료, 그리고 판매조건 및 구매시 사용 통화 등과 같은 거래관련 기타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 및 원산지 조사 등은 수입신고 수리후 심사를 원칙으로 함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수입물품의 원산지 오류 수정신고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수출자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 원산지오류를 수정신고 하여야 함

수입자

Importer

FTA 협정상의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수입재료 가격

the price of imported materials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는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에 의한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하되, 한-칠레, 한-미 FTA는 국제운송비(Freight Charge)를 공제하여 산출하고, 한-싱가포르 FTA는 국제운송비를 가산하여 산출함

수입자 보관서류

원산지증명서 사본(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등

수출자

Exporter

FTA 협정상인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 통상적인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계약 당사자인 해외 공급자를 의미

수출자 보관서류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재료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등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방식

다음과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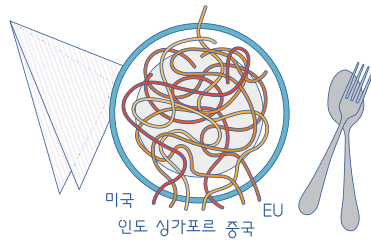
공제법(Build-down)에서는 FOB 기준의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순원가법에서는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공제하여 계산함

*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 $\frac{\text{상품가격(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순원가)}} \times 100$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



실질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967년 아시아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동남아시아 협력, 안보유지, 경제사회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 간에 특혜무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무역협정

회원국 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방콕협정이라 칭하던 것이 2005년 11월 ESCAP 개발도상 회원국 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정에서 APTA로 개칭

양국누적

원산지결정시 누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FTA 협정 당사국이 양쪽 다 1개국인 경우 1+1방식으로 상호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예

한-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역내가공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 공정이 모두 체약국의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은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재료도 원산지 물품일 것을 요하나 역내가공 원칙은 '공정'에 초점을 맞춘 것임

각 협정의 원산지상품 관련 규정에서 천명하고 있으며, '영역원칙' 또는 '역외가공 금지 원칙'으로도 표현됨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생산업체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임

역내부가가치법

Regional Contents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비율 요구 수준

Local Contents 또는 Domestic Contents로도 불리며,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계산방법이 주로 사용됨



역내산 재료가치

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FTA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

아세안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

EU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

역내선박 인정요건

선박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FTA(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EU)는 선박의 당사국 내 등록과 당사국 국기계양 모두를 요건으로 하나, 한·EFTA FTA는 국기만 계양하면 됨

따라서 한·EFTA FTA의 경우 당사국에 등록하지 않은 선박 즉,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당사국 국기를 달고 물품을 획득하면 완전생산 원산지물품이 됨

역내 완전생산품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 영역의 범위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나, 일부 협정은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역외가공

OP : Outward Processing

제품 생산의 최종 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

그러나, 불인정시에는 제품생산의 전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역내가공 촉진

한-싱, 한-EFTA에서는 일부 품목의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음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 → 제3국 → 당사국 → 수출)에 대하여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외가공 허용기준

일반적으로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일정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역외가공 적용물품

Outward Process

역외가공 특례가 적용된 물품을 말함

*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우리나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



역외산 재료

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함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염색가공 공정 기준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영역

Territory

보편적으로 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토, 영공, 영해를 의미

* 협정별로 영역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

영해

Territorial Sea

협정에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함

완전 미조립물품

Complete Knock Down Goods

조립 또는 결합되지 않았으나 완성품이 되기 위한 구성품을 모두 갖추어 세트(Set)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
해외의 바이어나 현지공장에 부품/반제품들을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형태

완전생산 간주물품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예

역내 선박으로 역외(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완전생산물품

Wholly Obtained Goods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물품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 시대에는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됨

이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품은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을 말함

이러한 의미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 물품이어야 하고, 공산품의 경우 부품 또는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다른 나라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하나, 실정법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완전생산품기준을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완화하여 1국 완전생산품, 역내 완전생산품, 완전생산 간주물품의 세 가지 유형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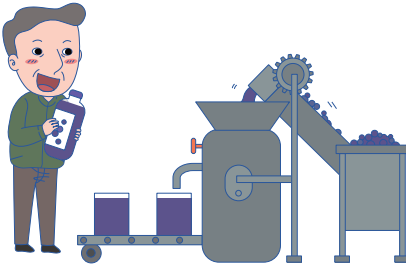
완전생산기준

WO :
Wholly Obtained Criterion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에서 블루베리의 파종부터 재배 및 수확, 제조·가공까지 했으므로 이 블루베리주스의 원산지는 한국이지.



블루베리 제조 및 가공

외부 원산지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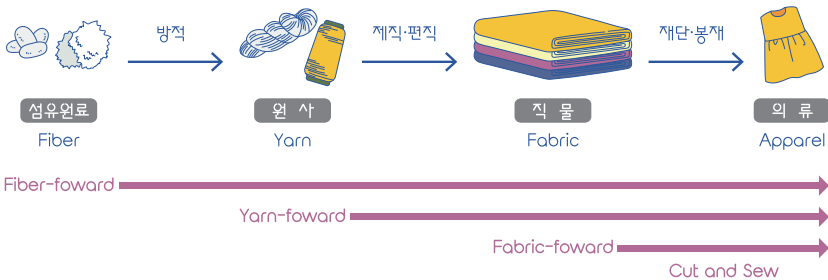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 중의 하나로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관세사나 변호사 등으로 볼 수 있음

이들의 주요 업무는 원산지 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 총족여부 확인·관리, 원산지 판정·증명·자율발급 및 관리업무와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원사기준

Yarn forward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 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원산지

Country of origin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의미

어떤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으로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과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자본 투자국·브랜드 소유국·기술 제공국과 구별됨

원산지 검증

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

①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②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별 기준에 관한 요건

FTA협정에서는 각 원산지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어,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이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검증방식

Origin Verification Metho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함



원산지 결정

Preference criterion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때,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함

수출입물품에 표기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수출입 통계, 대외무역조치 발동, 특혜 관세 적용 등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임

원산지 결정기준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음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에 일정서류를 갖추어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 원산지상품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Good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의 상품을 말함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내용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됨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음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 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원산지 재료가격에 가산되는 요소로 국제·국내운송 관련 비용(운송, 보험료 등), 수입제세(환급액 제외), 통관 수수료, 폐기물, 무용물 비용(재활용분 제외) 등이 있음

원산지 증빙서류

Supporting Documents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함

원산지 특례규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누적기준, 세번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에 대한 특례규정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of Origin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함



원산지 포괄증명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증명 시작일부터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원산지 확인기준

Criteria of Origin Certification

일반적 원산지 확인기준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직접운송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함

원산지결정 공통기준

특정 품목군에 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원산지규정의 별표인 품목별기준표에서 ‘부’, ‘류’등의 ‘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일부품목은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개별기준을 두지 않고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

한-아세안, 한-인도 FTA

-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개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예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 기본원칙

원산지결정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으로 동 원칙에는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품기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 공정은 1개국 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음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뉨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며
품목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같이 적용함



원산지 관리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하는데, 원산지관리사의 획득은 그 요건 충족의 하나인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FTA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도입됨

원산지규정

ROO :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

- ① GATT(General Agreement on Tarri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② 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구별됨
 - (1) 반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세이프가드(Safeguard)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규정
 - (2) 검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 (3) 수출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원산지소명서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함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함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님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 포함)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연기신청서를 사전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OCP :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 of Origin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로,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명시함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를 통보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함



원산지
조사의 기간
(간접검증 회신기간)

관세청장은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아세안 2개월, EFTA 15개월, 인도 3개월 등)내에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원산지조사의 범위

원산지조사의 해당 범위

-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을 받은 경우
- ② 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C/O : Certificate of Origin

수출물품이 FTA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함

원본 1부와 부분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분 1부(인도와의 협정은 2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분 1부를 보관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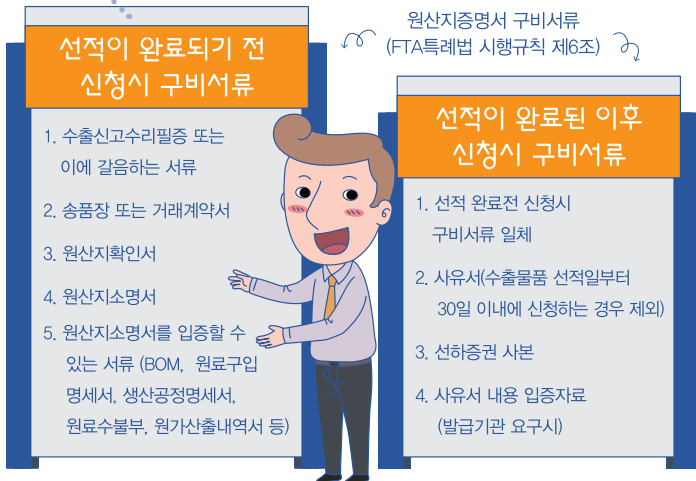
*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

신청자

Applicant of C/O

FTA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3.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4.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계약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함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3. 품명, 품목번호, 수량, 금액 및 원산지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Reissuance of C/O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정정발급을 받을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함

- ① 기관발급-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등
- ② 자율발급-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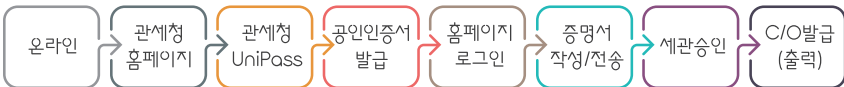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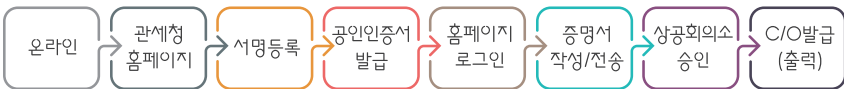
- ① 수출신고필증사본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 확인서 ④ 원산지소명서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입증서류 등

다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세관 발급



*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수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특수원산지증명서에는 가공원산지증명서, 재수출, 환적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부분, 임시원산지증명서, 소급원산지증명서, 대체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통상적으로는 발급되는 일반원산지증명서는 그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되나, 특수원산지증명서 중에는 원산지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가공국 또는 경유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한 것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Materials for confirming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서 예컨대, 최초 적출국의 출항증명서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말함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됨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원산지 판정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

원산지 표시

상품의 원산지를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등) 하는 것

원산지 확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

원산지 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수출 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원산지확인 서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말함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 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 내역서 등

3.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등 원산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심사 시

- ①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연합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 강소국으로 구성된 자유 무역체제

유사누적기준

Diagonal cumulation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함

유사물품

Similar Goods

당해 물품과 HS 6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일국 완전생산품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예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 수확한 쌀

일반기준

General rules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일반기준은 다시 기본원칙과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음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수렵, 낚시나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등을 말함

임시원산지 증명서

Temporary certificate
of origin

최종 목적국이 미정인 상태에서 임시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최종 목적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임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겠군.



자가생산된 재료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함

(한-미 FTA) 한국-칠레 FTA와 한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자가생산된 재료(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EFTA FTA 및 한국-ASEAN FTA에서는 동 용어의 규정이 협정문 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산지 인정기준시 비록 중간재 혹은 자가생산된 재료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와 동일한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특정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증명 문구를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증명서



자율발급제

Voluntary Issuing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식

재단&봉제 공정 기준

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재료명세

BOM : Bill Of Materials

제품에 소요되는 부품, 부속품, 기구물, 포장재 등의 종합적인 목록을 말함 (일명 Part list)

재료의 가격

Value of Materials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출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은

- ①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소재지로 국제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관세가격이 됨
- ②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생산자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 됨
- ③ 중간재의 경우에는 다음을 합산하여 결정됨
 -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시 발생한 모든 비용
 - 이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미 FTA)

재생용품

Recovered Goods

다음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함

- ①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②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검사·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한-미 FTA)

재수출·환적 원산지증명서

Re-export / Trans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생산국이 아닌 나라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원산지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3국

Third country

■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비당사국을 말함

조정가격

■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

중간재

Indirect materials

■ 최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함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물품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됨

중간재 흡수 원칙

Absorption / takeover principle
/ roll up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함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

중간재 규정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간재 가격의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의 분야별 특례로 부가가치 기준에만 해당함

증명서발급기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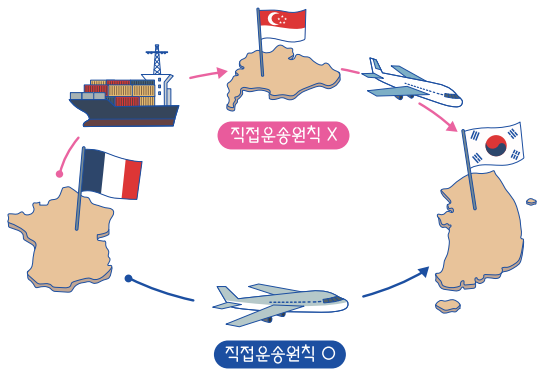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직접운송원칙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칙

다만, 비체약국을 경유(經由)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허용됨



직접운송원칙 예외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직접운송의 예외로서 일정조건하에서 특혜를 주는 예외가 인정됨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 집적법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 \frac{7,000}{35,000} \times 100 = 20\%$$

체약상대국

The other party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 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체약상대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것

최혜국대우

MFN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GATT 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됨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해당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은 추상적으로는 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함

특정공정기준

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특정물품의 주요한 제조 가공, 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표준원산지관리 시스템

FTA-Pass

관세청이 개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한 업체 중 품목별로 현행 기관발급에 준하는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인증받은 수출자(협정별·HS6단위별 포괄인증)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해당물품에 한정하여 한-EU FTA협정의 자율증명을 할 수 있거나 간이하게 기관발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
Product Specific Rules

각 품목별(HS code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중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규정

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

물품의 세번(HS)을 분류하여 정하는 행위

품목분류사전심사

Pre-confirmation of tariff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떤 품목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있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통지를 받는 제도

현지조사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 신청이 가능

협정관세 적용배제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세관장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MFN 실행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로서 협정관세 적용배제와 협정관세 적용정지 두 가지가 있음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해제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

본 용어집은 입무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FTA 핵심 용어집

용어를 알면, FTA가 쉬워집니다!

발행일 | 2019년 5월

발행처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2과

기획 | 정승환, 손영환, 이종범, 문수정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70 수출입통관청사

전화 | 032-722-4023

디자인제작 | (주)아미고디자인
02-517-5043

FTA 핵심 용어집

용어를 알면,
FTA가
쉬워집니다!



인천본부세관
Incheon Main Customs